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6. 11.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76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5. 30. 강남구청장(주민자치과)

나. 상정의결

- 제319회 강남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2024. 6. 11.)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행정국장 : 이호현)

가. 제안이유

- 강남구 구민의 상의 종류를 정비하고 다양화하여 구민의 공감과 참여도를 높이고 구민의 상의 영예를 제고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구민의 상 종류 신설 및 정비(안 제4조)
- 구민의 상 종류 개정에 따른 부분별 심사기준 마련 및 정비(안 제5조)
- 기타 문구 수정(안 제1~2조,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10조, 안 제13~14조, 안 제16조)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2) 입법예고(2024. 4. 19. ~ 2024. 5. 9.)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3) 규제심사: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부패영향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평가: 특기할 사항 없음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구민의 상은 강남구의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공적이 현저한 구민과 단체 등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구민의 상 종류를 시상 취지와 상징성에 부합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 안 제1조(목적) 및 제2조(수상대상)에서는 조문을 정비하고
 - 안 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중 제3호의 ‘장한 어머니상’ 을 ‘모범 가족상’ 으로 변경하는 것임. 「여성발전기본법」이 사회 환경 및 법제 변화에 따라 2014년에 「양성평등기본법」¹⁾으로 전부개정되었으며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성별영향 분석평가 도입 등 양성평등 촉진 및 실현을 위한 상위 법령과 제도에 부합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다양한 연령 및 세대 내지는 여러 인원이 화목하고 건강하게 같이 생활하는 가족공동체는 그 존재 자체로서 의미가 있으며, 이들이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개정은 타당하다고 보여짐. 제4호의 ‘효행상’ 을 ‘미래 인재상’ 으로, 제5호 미래 인재상 청년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인구 구조 및 가족 기본단위에도 변화가 일어나면서 세대별 가치관에도 많은 변화가 나타나 미래사회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게 될 자녀 세대의 인재상에 대해서도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음. 따라서 청년 및 청소년을 수상후보자로 상의 심사기준을 가정 내 효행에 국한하지

1) (舊) 「양성평등기본법」 (2015. 7. 1.시행),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타법개정]
「여성발전기본법」의 법률 제명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변경되었음.

않고, 미래에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인재에게 수상하는 것은시대상에 부합하는 변화라고 보여짐. 제8호 및 제9호의 ‘납세상’ 을 ‘경제인상’ 으로 확대하여 납세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자 등 포괄적인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것으로 보임. 제12호의 ‘통일안보상’ 을 ‘평화안보상’ 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통일안보상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2016년 신설되었으며, 단체부문과 개인부문으로 나뉘어 있었음. 다만, 통일이라는 주제에 국한된 범위에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려다 보니 다른 상과 비교하여 접수자가 적고 경쟁률이 낮아서 심사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 통일보다 상대적으로 광의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평화를 주제로 하여 심사기준을 변경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고 보임. 또한 개인과 단체로 나뉘어져 있던 부문을 하나로 통합하고, 개인 또는 단체를 수상후보자로 접수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심사기준을 완화한 것도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제13호에 ‘특별상’ 을 신설하려는 것은 글로벌 시대에 개인 및 단체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무대가 반드시 지역적 한계에 국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상의 종류를 신설하고 심사기준을 정한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 보임. 다만, 심사기준에서 공적 및 공로는 입증 자료 등으로 세부 내용을 설명할 수 있으나, 명성의 경우 기준이 다소 불명확 할 수 있고 일반 대중보다는 일부 특정 분야 또는 집단 내에 한정될 수도 있어 자의적 판단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음. 비록 심사위원회에서 전문지식을 가진 심사위원들이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하게 심사하고 시상 여부를 결정하겠으나, 새로이 신설된 종류의 상인만큼 이에 대하여 관리책임부서가 관심을 가지고 향후 심사기준을 보충하거나 수정할 부분이 있는지 세심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 안 제5조(심사기준)에서는 부문별 심사기준을 새롭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심사기준이 일부 불확실한 규정과 추상적인 조문으로 규정되어 세부적인 심사기준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그 밖에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는 조문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개정하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 본 조례안은 사회 변화에 따라 타인의 귀감이 되는 기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으

므로 상의 종류 및 심사기준의 변경은 변화하는 시대적 현실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보여져 바람직하다고 보이나 심사기준이 너무 모호한 측면이 있어 심사 시에는 좀 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376호

제안일자 : 2024.6.11.

제안자 : 행정재경위원장

1. 수정이유

- 개정안의 모범 가족상 대상 중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성을 둔 조문을 간단명료하게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주요내용

- 심사기준에서 다문화 가족의 구분 없이 가족의 범주에 포함시켜 모범 가족으로 조문을 명료화 함 (안제5조제3호)

강남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3호 중 “가족 또는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서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활동 참여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족”을 “모범가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5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구민대상은 용감한 구민상, <u>장한 어머니상</u>, <u>효행상</u>, <u>봉사상</u>, <u>모범 청소년상</u>, <u>모범 납세상</u>, 아름다운 기부상 및 <u>통일안보상</u>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경우</p> <p>2. (생략)</p> <p>3. <u>장한 어머니상은 어진 어머니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경우</u></p>	<p>제5조(심사기준) (현행과 같음)</p> <p>1. ----- ----- <u>모범 가족상</u>, <u>미래 인재상</u>----- ----- <u>경제인상</u>----- ----- ----- <u>평화안보상</u> ----- ----- ---</p> <p>2. (현행과 같음)</p> <p>3. <u>모범 가족상은 세 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여 다른 가족의 귀감이 되는 가족 또는 혼인 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다문화가족으로서 양성평등하고 건</u></p>	<p>제5조(심사기준) (현행과 같음)</p> <p>1. (개정안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u>모범 가족상은 세 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여 다른 가족의 귀감이 되는 모범가족</u></p>

강한 가정생활과 사
회활동 참여로 타의
모범이 되는 가족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강남구민”을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으로 한다.

제2조 중 “단체이어야”를 “단체로”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민의 상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13개 부분으로 한다.

1. 구민 대상
2. 용감한 구민상
3. 모범 가족상
4. 미래 인재상 청소년부문
5. 미래 인재상 청년부문
6. 봉사상 개인부문
7. 봉사상 단체부문
8. 모범 경제인상 개인부문
9. 모범 경제인상 법인부문
10. 아름다운 기부상 개인부문
11. 아름다운 기부상 단체부문
12. 평화안보상
13. 특별상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대상은 용감한 구민상, 모범 가족상, 미래 인재상, 봉사상, 모범 경제인상, 아름다운 기부상 및 평화안보상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경우
2. 용감한 구민상은 자기의 희생을 무릅쓰고 주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거나 안녕질서에 특별히 헌신한 공로가 있는 경우
3. 모범 가족상은 세 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여 다른 가족의 귀감이 되는 모범가족
4. 미래 인재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가치관이 건전한 인재로서 리더십, 창의성, 사회참여, 봉사 등의 영역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청년
5. 봉사상은 지역 또는 주민을 위하여 봉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6. 모범 경제인상은 강남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사무소 등을 두고 모범적인 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경우
7.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경우
8. 평화안보상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평화안보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9. 특별상은 특정 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수한 공적이거나 공로로 강남구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 단, 특별상은 수상자의 공적에 맞게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중 “이 상은”을 “구민의 상 수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이 상”을 “구민의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후단 중 “주관과”를 “주관부서”로 한다.

제10조 중 “구민”을 “강남구민”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 상”을 “구민의 상”으로 한다.

제14조 중 “이 상을 직접 받을”을 “구민의 상을 수상하는”으로 한다.

제16조 중 “규정”을 “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강남구민</u>으로서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공적이 현저한 구민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서울특별시 강남구민</u>----- ----- ----- ----- ----- -----.</p>
<p>제2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이하“ 구민의 상”이라 한다) 수상대상은 강남구민으로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과 소재하고 있는 법인이나 <u>단체이어야</u> 한다.</p>	<p>제2조(수상대상) ----- ----- ----- ----- ----- ----- ---- <u>단체로</u> -----.</p>
<p>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의 상 종류는 <u>다음과</u> 같이 13개 부분으로 한다.</p> <p>1.·2. (생 략)</p> <p>3. <u>장한 어머니상</u></p> <p>4. <u>효행상</u></p> <p><u><신 설></u></p> <p>5.·6. (생 략)</p> <p>7. <u>모범 청소년상</u></p> <p>8. 모범 <u>납세상</u> 개인부문</p>	<p>제4조(상의 종류 및 인원) ① 구민의 상 종류는 <u>다음 각 호와</u> 같이 13개 부분으로 한다.</p> <p>1.·2. (현행과 같음)</p> <p>3. <u>모범 가족상</u></p> <p>4. <u>미래 인재상 청소년부문</u></p> <p>5. <u>미래 인재상 청년부문</u></p> <p>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p> <p><u><삭 제></u></p> <p>8. 모범 <u>경제인상</u> 개인부문</p>

9. 모범 납세상 법인부문

10. · 11. (생략)

12. 통일안보상 개인부문

13. 통일안보상 단체부문

② (생략)

제5조(심사기준)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민대상은 용감한 구민상, 장한 어머니상, 효행상, 봉사상, 모범 청소년상, 모범 납세상, 아름다운 기부상 및 통일안보상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경우

2. (생략)

3. 장한 어머니상은 어진 어머니로서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녀와 가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한 경우

4. 효행상은 아버이 공경하기를 하늘같이 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경우

5. (생략)

9. 모범 경제인상 법인부문

10. · 11. (현행과 같음)

12. 평화안보상

13. 특별상

② (현행과 같음)

제5조(심사기준) -----
-----.

1. 구민대상은 용감한 구민상, 모범 가족상, 미래 인재상, 봉사상, 모범 경제인상, 아름다운 기부상 및 평화안보상 수상 대상자 중 가장 공적이 우수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모범 가족상은 세 자녀 이상 또는 3대가 같이 살며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생활로 가족공동체 확산에 기여하여 다른 가족의 귀감이 되는 모범가족

4. 미래 인재상은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어 갈 가치관이 건전한 인재로서 리더십, 창의성, 사회참여, 봉사 등의 영역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 청년

5. (현행과 같음)

6. 모범 청소년상은 장차 우리 사회를 이끌어 갈 청소년으로서 건전한 가치관과 생활로서 모범이 되는 경우

7. 모범 납세상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에 기여한 경우

8.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 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경우

9. 통일안보상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통일 안보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제6조(표창권자) 이 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6. 모범 경제인상은 강남구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사무소 등을 두고 모범적인 납세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경우

7. 아름다운 기부상은 사회공헌 사업 및 자선사업 등에 필요한 금전과 물품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는 경우

8. 평화안보상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평화안보 운동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경우

9. 특별상은 특정 분야에서 국내·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수한 공적이나 공로로 강남구를 빛낸 개인 또는 단체. 단, 특별상은 수상자의 공적에 맞게 명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표창권자) 구민의 상 수여는 ----.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이 상의 수상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구민의 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 ④ (생략)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주민자치과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과 업무담당 팀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⑥ (생략)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문별 관계 기관 및 관계 단체장 또는 구민 15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등) ① 이 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할 수 없다.

② (생략)

제14조(상의 대리수상) 이 상을 직접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받을 수 있다.

① 구민의 상-----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주관부서 -----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수상후보자의 추천) ----

--- 강남구민 -----
-----.

제13조(이중표창의 금지 등) ① 구민의 상-----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상의 대리수상) 구민의 상
을 수상하는 -----

-----.

제16조(위원회 규칙) 위원회는 이
규정 이외에 공적 심사 등 위원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 규칙) -----
조례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3. 미첨부 사유

- 비용 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 주민자치과 지방행정주사보 송정현(02-3423-5198)